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직무상 준수기준 신설 등〉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9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직무상 준수기준 신설 등	3

I. 개요

1.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6. 11.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3항 · 제4항 및 제52조제3항 · 제4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직무상 준수기준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¹⁾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상 준수기준을 신설하고, 준수기준 위반 시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제4항 및 제52조제3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1조(조리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1조(조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1.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u> <u>2.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u>

1) 2019헌바141, 현재 2023. 3. 23.

<신 설>

제52조(영양사)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단급식소의 조리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리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영양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2. 급식시설의 위생 기준

3. 운영일지 작성에 관한 기준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기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④ . ⑤ (생략)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양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 -----. 제10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조리사 및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에서는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3. (생략)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3. (생략)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²⁾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제96조 처벌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계로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거나,

제52조제2항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한 직업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³⁾.

□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대강의 업무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준은 총리령

2) 2019헌바141, 헌재 2023. 3. 23.

3) 소수의견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및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형사처벌을 택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구성요건별 제재 수위 비교 >

현행		개정안		
구성요건	벌칙	구성요건	벌칙 등	
제51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제51조제1항 위반 (조리사 의무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제51조제2항 위반 (조리사 준수기준)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2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제52조제2항 위반을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결정	제52조제1항 위반 (영양사 의무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제52조제2항 위반 (영양사 준수기준)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로,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및 제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사·영양사 의무 배치 조항이었으며, 같은 법 제96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병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즉, 당초 「식품위생법」 제96조는 조리사·영양사 ‘미배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 조항이었음.
- 그런데, 2011년 6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조리사·영양사의 ‘직무 범위’ 규정(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벌칙 조항인 제96조는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임.

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식품위생법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제51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u><신 설></u>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u><신 설></u>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 좌 동 ></u>

□ 개정안에 따른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의 직무상 준수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집단급식의 공익적 중요성과 해당 의무를 통하여 예방하려는 위해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4항은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은 일반적으로 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적법한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시정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⁴⁾임.

반면, 현행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리사의 직무인 조리·배식·구매식품의 검수 지원과, 제52조제2항에 따른 영양사의 직무인 검식·배식관리·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은 대부분 급식이 이루어지는 당일 즉시 이행되어 종료되는 업무임.

- 예를 들어, 구매식품을 검수하지 아니한 채 이미 조리에 사용하거나 검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시정하더라도 당시의 위반상태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검수, 검식 및 조리과정의 위생관리는 급식 제공 이전에 이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18~319

루어져야 하는 사전적·예방적 업무인바, 위반행위 발생 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식중독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조리사·영양사의 직무기준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제도적 성격과 해당 직무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의 준수기준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조리사의 구매식품 검수 지원 직무(제51조제2항제2호)와 영양사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직무(제52조제2항제1호)는 준수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재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준수기준을 두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직무규정과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준수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처벌대상이 되는 영양사의 직무위반 범위가 불명확·광범위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직무미수행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준수기준의 범위는 직무의 중요성 및 위반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리사의 구매식품 검수 지원과 영양사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는 급식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중요한 직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준수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 주체별로 다양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상 준수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행정적 책임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됨⁵⁾.

5) 「식품위생법」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 11.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퍼.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4호	500	750	1000

또한,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됨⁶⁾.

<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 발생 시 제재규정 >

구 분	근거 규정	처분 형태	처분 내용
설치·운영자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제101조	행정질서벌 (과태료)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1천만 원 이하)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80조	행정처분(면허)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행정처분(면허)	6개월 이내 면허정지, 3회 이상 누적 시 면허 취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4. 조리사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6)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 최근 5년내 집단급식소 조리사 직무위반 및 행정제재 현황 >

업소명(소재지)	점검일	위반내용	위반법령조항	행정처분
○○○○○ 어린이집 (서울시 동작구)	2025.7.28.	식중독이나 그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주) ○○○○○○점 (청주시 흥덕구)	2025.9.29.	식중독이나 그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함께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엄격하여, 「형법」 제268조7)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참고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상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려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282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결정을 계기로 벌칙 대상이 되는 위

7)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 벌칙을 삭제하더라도 조리사·영양사가 직무수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조리사·영양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중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 헌법재판소(2019헌바141)의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함.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리사·영양사의 직무와 개정안의 준수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 및 혼란이 우려됨.
- 또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 다른 규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조리사·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15개 교육청과 일부 학교(117개교)에서도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한병원협회:

-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정하

여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병원의 경우 급식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식자재 및 급식시설 관리 등 개정안의 준수사항은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가 수행하고, 병원 소속 영양사는 임상영양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럼에도 개정안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병원 소속 임상영양사까지 포함될 경우, 실제 급식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상영양사가 위탁업체의 과실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급식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여 업무 위탁 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한영양사협회:

- 개정안은 영양사의 준수기준을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처벌대상은 무면허 행위, 유사명칭 사용 등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해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준수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인력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개선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모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리사를 각각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또는 2식 이상을 제공하는 급식소 등에 복수 영양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법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영양사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면허자의 영양사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식자재유통협회:

-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위생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사각지대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모두 소지하여 겸직하는 경우 검수·교육과 조리·기구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위반 시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총리령에서 시설과 기구·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결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기준 미달이 과도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식품산업협회:

- 현행 「식품위생법」은 조리사의 직무로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을, 영양사의 직무로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리사의 구매식품 검수 지원은 신설되는 준수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 직무와 준수기준 간 적용 대상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두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조리사가 검수업무를 수행하거나 영양사와 분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영양사에게만 검수·관리 관련 준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무수행 및 책임범위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조리사의 구매식품 검수 지원을 준수기준에 포함하고, 총리령에서 조리사의 검수 지원 범위와 영양사의 검수·관리 책임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현황
-------------	-------------------------

□ **집단급식소 유형**(「식품위생법」 제2조)

- ① 기숙사
- ②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③ 병원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⑤ 산업체
-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⑦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집단급식소 업체별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현황** (2026. 8.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기숙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공공 기관	기타 (수련원, 학원 등)	총계
개소	175	25,140	4,060	3,701	9,763	1,917	955	45,711
조리사**	237	34,149	7,525	3,987	7,154	2,436	999	56,487
영양사**	334	38,831*	8,126	4,624	11,160	3,442	1,189	67,706

* 1개 집단급식소에 다수의 조리사 및 영양사가 근무 중임.

□ 개별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규정

구 분		관련 법령	배치 기준	
① 기숙사		규정 없음		
② 학교, 유치원	「학교급식법」	영양교사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제외	
		조리사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영양사	100명 이상 모든 어린이집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 40명 이상 시설당 1명(8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③ 병원	「의료법」	영양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당 1명 이상	
		조리사	규정 없음	
④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 입소자 30명 이상(1명) 등	
	「장애인복지법」	영양사	1명 이상(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 시설당 1명(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5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아동복지법」	영양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등 시설별 기준 정함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명(30명 초과 시 1명 추가), 각 시설별 기준 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영양사, 조리사(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 가능	
⑤ 산업체		규정 없음		
⑥ 공공기관		규정 없음		
⑦ 그밖의 후생기관등	신후조원	영양사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명	
		조리사	규정 없음 ※ 조리원 : 1명	
	학원, 청소년수련원 등	규정 없음		